

#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문

(‘24.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

○ 사회적기업이 정관 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관 등의 기재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p>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사업내용</li> <li>3. 명칭</li> <li>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li> <li>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li> <li>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li> <li>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li> <li>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li> <li>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li> <li>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b>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p>	<p>제11조(정관등의 기재사항) 법 제9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li> <li>2. 사회적기업의 자원 조달</li> <li>3. 사회적기업의 회계</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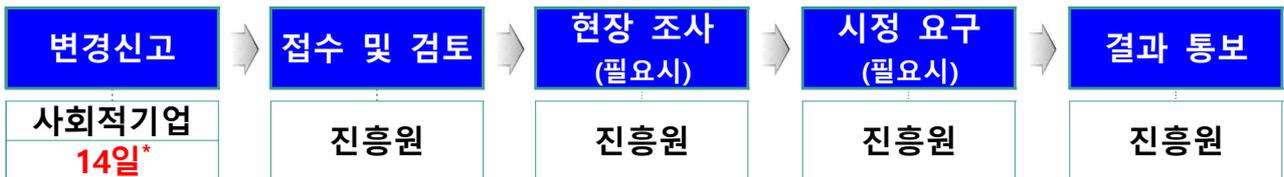
## □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 [인증서 재발급 필요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증서 재발급 필요사항](#))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응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사회적기업의 자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 □ 정관 등 변경신고 절차

○ 정관 등 변경신고 절차



\* 사회적기업은 정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시스템)에 반드시 신고

## □ 정관 변경신고 제출 서류

①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정관변경 신고서(서식), 이사회 등 회의록, (신) 정관(※ [공증 필요](#)), 신·구조문 대조표(정관 개정사항 표기)

② 조직형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인법인 등

↳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정관변경 신고서(서식), 이사회 등 회의록, (신)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인가)서

□ 변경일의 기산점

①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기산점: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

② 조직형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인법인 등

↳ 기산점: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

□ 정관 등 변경신고 미이행 시 제재조치

○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0.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1)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2)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90만원
3)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0만원